# 변경대비표

## 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10 월 30 일
3. 정정사유 : 운용 및 투자제한 문구 추가
4. 정정내역

| 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|---|---|---|
| **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** |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1.~4. (생략)<br>5.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br>가. ~나. (생략)<br>다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,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br><이하 생략> |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1.~4. (현행과 동일)<br>5.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br>가. ~나. (현행과 동일)<br>다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br><이하 현행과 동일> |
| **부칙** | - | **(변경시행일)**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|